

學校保健 支援體制의 改善

鄭 相 煥
(文教部義務教育課長)

I. 學校保健의 現況

學校保健이란 학생 및 교직원이 健康하고 安全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학문과 기술이며, 이를 위한 모든 保健活動을 말한다. 즉, 학령기는 우리 일생을 통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육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 이므로 疾病豫防과 健康增進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보건 교육과 보건 관리, 환경 정화 사업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급격한 사회 발전 및 생활 환경의 변화로 경서 장애, 각종 공해 요인으로 인한 건강 장해 등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이 다양해졌으며, 식생활 개선으로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체력의 신장, 비만 학생 증가, 체질 허약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질병 양상도 과거에는 生物學的 原因의 질병, 급성 질병, 傳染性 疾病으로부터 社會文化의 原因의 질병, 만성 질병, 非傳染性 疾病 등으로 바뀌고 있는 현대에서는 집단 관찰 내지는 집단 보건 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84년도 초 문교장관은 '건강교육을 강조하여 건강한 학생을 만들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健康한學校를 育成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 學校保健의 대상 인구는 전체 인구 40,500,000명 가운데 학생 11,303,133명과 교원 292,769명을 합쳐 11,595,902명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많은 대상자가 학교 보건 교

육과 보건 사업을 통하여 건강 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면 이는 곧 국민 전체의 건강 생활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각급 학급별로 학교 보건 사업의 접근 방법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학교 보건 교육 및 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1. 學校保健機構와 組織 및 人力

가. 학교 보건 담당 기구의 연혁

1945. 9 교화국 체육과

1961. 10 체육국 학교체육과

1973. 3 체육국 학교급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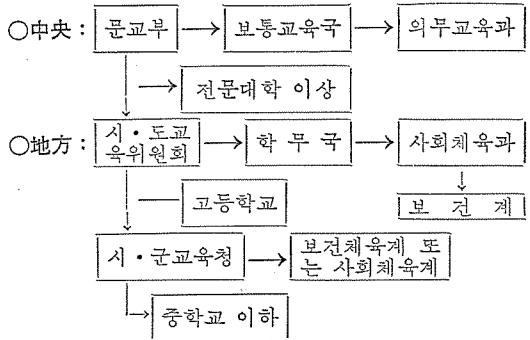
1979. 3 체육국 학교보건과

1981. 11 체육국 학교체육과

1982. 3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

(학교급식, 학교체육업무는 체육부로 이관됨)

나. 學校保健의 擔當組織



다. 학교 보건의 담당 인력

○보건직 공무원

문교부	1명
시·도교육위원회	75명
시·군교육청	164명
급식국민학교	465명
계	705명

○학교 보건 요원

학교의, 치과 교의, 학교 약사는 당해 학교 장이 위촉.

학교 양호교사는 2,595명(초: 1,805명 중: 436명, 고: 354명)으로 초·중·고교 전체의 25.1%에 배치.

○전문대학, 대학(교)의 학교 보건소, 진료소, 의무실 등의 요원은 총(학)장 재량으로 필요 한 인원을 임명 배치.

2. 學校保健事業을 위한 法的 根據

學校保健事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는 1949. 12. 31 법률 제86호로 공포된 교육법과 1970. 2. 12 대통령령 제4589호로 공포된 교육법 시행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등 법률에서는 각급 학교 교육을 통하여 보건 생활에 대한 이해를 짚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보건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67. 3. 30 법률 제1928호로 공포된 學校保健法과 1969. 11. 25 대통령령 제4311호로 공포된 학교 보건법 시행령에서는 학교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보건 시설, 학교 환경 위생, 보건 관리, 보건 인력 및 보건기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9. 7. 19 문교부령 제241호로 공포된 학교 신체검사 규칙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의 체격, 체질, 체력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은 양호실을 설치하여 필요한 기구 및 약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기타 지역사회 보건 사업 조직인 보건소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보건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

는 전염병 예방법, 기생충 질환 예방법, 결핵 예방법 등 보건 관계 법규가 있다. 이상과 같은 법과 규정을 근거로 당부에서는 매년 學校保健管理指針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알려주고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學校保健事業 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보건 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교육 과정에 의하여 체육 배당 시간 중 국민학교에서는 5%, 중학교는 15%, 고등학교는 25%를 보건 교육에 대한 학습을 부여하도록 하고 또한 각종 보건 행사, 신체 검사, 명리 검사, 예방 접종 등을 통하여 수시 교육을 하도록 한다.

둘째, 學校身體検査 실시는 학교 身體検査規則(改正 1979. 6. 25 문교부령 제 446호)에 의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세째, 학교 보건 봉사로로서 학생에 대한 병리검사를 연 1회 또는 연 2회씩 실시도록 하고,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및 학교 교구 설비에 관한 규칙에 의한 養護室을 설치 학생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 예방 접종과 전염병 예방 관리, 불소 용액 양치사업 등을 실시도록 한다.

네째, 學校 環境衛生 정화 사업으로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 학교의 우물물 및 펌프물을 정기적으로 검사·소독하여 水因性 傳染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환경 정화 구역 내의 危害業所를 규제 관리함으로써 勉學霧靄氣를 조성도록 하고 있다.

II. 學校保健의 問題點

1. 法的 側面

가. 學校保健法 제 4조(學校環境衛生 및 食品衛生)에는 학교 보건 사업의 필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동법 제 9조(학생의 保健管理)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體位 向上, 營養管理,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

다'라고 되어 있으나 학생의 학교 생활 자체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므로 學生保健管理가 소홀해질 소지가 있다.

다. 동법 제15조(학교의,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에는 학교 보건 요원을 '둔다'로 되어 있으므로 教育法施行令 제38조를援用, 국민학교 18학급 미만 학교는 '둘 수 있다'로 해석 등으로 양호교사를配置 않은例는是正되어야 한다.

2. 組織 및 人力側面

學校保健行政 및 사업을 專擔하고 있는 獨立組織이 없으며, 專門人力이 전혀 없는 형편이다. 시·도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구)청,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學校保健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학교 보건 첨체 현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3. 學校保健施設 및 保健教育資料 부족

학교 보건 사업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설인 양호실은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 의하여 교당 1실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교장실, 교무실, 숙직실, 창고와 겸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 獨立養護室施設이 시급한 과제이며, 保健教育을 위한 學習資料整備도 보완되어야 한다.

III. 學校保健對策 및 活性化方案

1. 學校保健 關係法規, 개정·補完

학교보건법, 동법 시행령을 개정·보완하고,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學校保健事業 추진에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學校保健要員 중 養護教師 배치는 教育法施行令과 學校保健法 및 동 시행령을 통합 1교 1인의 양호교사를 두도록 義務化하고, 이들의 업무를 의료업무와豫防保健 사업에 專念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2. 學校保健事業을 위한 組織強化 및 一元化

각급 학교의 保健事業의 計劃, 豫算支援,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中央行政機構의 強化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이에 충한 學校保健事業의 專門性을 개발할 保健專門職이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체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國民학교 紿食에 있어서 예산은 文教部 地方教育財政交付金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업무는 體育部에서 추진하고 있어 豫算과 定員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위원회에 대한 指導監督權을 가지고 있는 문교부로 移管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3. 學校保健事業의 豫算 確保

학교보건법 제18조(경비보조)에 '정부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부 재정 형편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타예산을 할애하여 운영하는 실정이다. 학교 보건사업의 총성을 위해서는 養護室設置費, 水質検查 및 消毒藥品費, 각종 신체 검사 수수료, 衛生施設維持費, 學校保健事業 개선研究費 등의 財源이 確保되어야 한다.

4. 學校保健諮詢委員會의 設置

학교보건법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학교보건위원회 구성), 제9조의 2(분과 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1.3. 각종 위원회 및 예규 또는 규칙 등의 정비시 해체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事業內容, 組織, 人力, 豫算 운영면에서 뒤떨어진 學校保健事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발점은 법적으로 학교보건사업의 최고 정책 결정 조직인 學校保健委員會의活性化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보건사업의 발전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이러한 자문 기관의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